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안동의료원 종합감사 -

2019. 6. .

3. 처분요구일람표

1. **부 운영 부적정 (통보)	3
2. 연차수당 미지급 (통보)	6
3. 의료영상 판독 및 솔루션 공급계약 부적정 (주의)	8
4.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10
5. 고정자산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13
6. 청소용역 기성대가 지급 부적정 (주의)	15
7. 인사위원회 구성 등 부적정 (주의)	17
8. □□□□□ 임대 부적정 (시정)	19
9.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20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부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처, **부
내 용

1. 의사 조제 입원처방전에 대한 관리 소홀

「약사법」 제23제 제1항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내원환자 또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약사(藥師)가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며,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의 유고시에는 의사가 대신하여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의사가 서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약사직 〰〰〰(〰〰〰장)이 휴가 사용 등으로 **부에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의사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조제 하도록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입원처방전에는 의약품 조제 당일 출근

하지 않은 약사직 □□□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날 일괄로 조제자 서명란에 □□□의 서명을 받아서 관리하였다.

2. 의약품 조제 실적에 따른 적정 약사인력 미확보

위 관서 「직제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직 중 약사직의 정원은 2명으로 하고, 병원운영실적(환자 및 의업수입증가)에 따라 기본 1명으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평균 조제수 80건 초과마다 1인식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8년 안동의료원 **부의 처방조제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내복·외용 76,889건, 주사 71,224건으로 운영일(315일) 기준으로 1일 내복·외용 244건, 주사 226건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면 최소 3명 정도의 약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8. 4. 1. \$\$\$을 약사로 채용하여 기존 □□□장 □□□을 포함하여 2명의 약사로 **부를 운영하였으나, 2009. 9. 30. \$\$\$이 퇴사하자 약사에 대한 인원 충원없이 2019. 5. 16. 감사일 현재까지 □□□장 □□□ 1인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

한편, 감사기간 중 비슷한 여건의 경상북도가 설립·운영하는 3개 지방의료원의 약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정원에 맞추어 적정 약사인력을 확보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동의료원만이 장기간 약사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약사 1인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이 입원처방전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적정한 수준의 약사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병원이 운영됨으로서 안동의료원의 약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약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약사직 정원 및 병원운영 실적에 따라 약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약사인력 수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차수당 미지급
소 관 청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안동의료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년차에 따라 25일 한도)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멸되지만, 병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회계규정」 제148조 및 제159조에 따르면 결산은 당해 연도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병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면하지 아니하므로 매회계년도 결산 시 보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로 표현하여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해야만 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경영악화로 2015. 8. 17. 안동의료원 비상경영대책위원회 (위원장 ○○○)가 구성되어 제수당 반납과 연차이월 소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전 직원에게 징구하면서 제수당은 6개월 평균 월 의업 수입 14억 달성 시 까지 반납하며 연차제도는 2016년 노사협의회에서 재협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6개월 평균 월 의업수입 14억원을 달성하자 2016. 2.

부터 반납하기로 되어있던 명절휴가비, 조정수당, 특별상여수당, 기관성과급 등을 다시 지급하였지만 연차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매년(2016년 ~ 2018년)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논의만 한 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매년 이월시켜 아래〔표〕와 같이 감사일 현재 525명의 2,055일 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224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미지급분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결산 재무재표를 작성하였다.

〔표〕 미지급 연차수당 내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수당 224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서에 미지급분 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아 2018년 결산 재무재표상에 채무 또는 손실금액에 224백만 원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영상 판독 및 솔루션 공급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병원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계약의 경우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회계연도 내 계속적으로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여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과 전문의 채용과 함께 의료영상 판독 및 솔루션 공급을 중단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공급받을 영상 판독 및 솔루션 공급 계약을 추정단가금액 (일반 59,200원 / 응급 82,000원)만으로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의원과 2018. 6. 28. 수의계약 체결하여 6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총 93,257,600원의 영상 판독 공급대가를 지출하였다.

더욱이 2018. 11. 12. ㉠㉠㉠㉠과 전문의 초빙을 위한 채용을 봉직의, 영상판독 경력이 많은 자를 우대 항목으로 채용공고를 진행하여 2019. 1. 1. ㉠㉠㉠㉠과 전문의를 채용하였는데 위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9. 1.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585건에 대하여 총 19,310,7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그 결과 경쟁입찰 대상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하여 안동의료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 ① 앞으로는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하거나 계약체결 등 원인행위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주의)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공고 제2018-13호(2018.2.10.) 과업지시서 4. 계약 원칙에 따르면 본 계약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운반·처리에 관한 운반비, 처리비, 전용용기 구입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일괄 단가로 정하여 계약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1.비용부담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전용용기, 부자재, 처리비용 등의 비용 일체에 대하여는 본 계약으로 체결된 kg당 계약단가에 포함하는 을의 부담으로 운영하고,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6.전용용기 공급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을은 갑의 전용용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공급 조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폐기물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물량을 비치하도록 하면서 2016년에는 합성수지 사용량이 1ℓ, 5ℓ, 20ℓ 등 각각 월 250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같은 공고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을은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의료폐기물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8. 2. 10.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긴급 입찰 공고 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된 후 같은 해 2. 19.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가 없자 같은 해 2. 28. (주)X X X과 수의계약으로 2년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주)X X X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를 위탁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합성수지 용기의 경우 월 수량이 1ℓ 100개, 5ℓ 150개, 20ℓ 200개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안동의료원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 조건을 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18. 4.부터 2019. 5.까지 [붙임] 의료폐기물 집행현황과 같이 8,349,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의료폐기물 전자태그 구입으로 1,732,5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등 총 10,081,5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고정자산 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의료원 「회계규정」 제110조의6 및 제118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제작, 교환, 증여 등에 의하고 그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 작성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3조에 따르면 자산관리담당은 연도 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등 변동 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자산의 변동 및 증감 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33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고정자산 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에는 고정자산 총괄대장, 감가상각대장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증받은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 관련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의료원에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그 상태를 파악하고 분기별 및 연말 기준으로 자산 변동 상황과 관련한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료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협회 %%%지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승용차 1대를 기증 받으면서 의료원이 직접 구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제 취득일(자동차등록일)과 다른 날짜를 취득일로 하여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였다.

아울러 의료원의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보고서 작성 및 정기적인 변동 상황

보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기간 중 고정자산 총괄대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자산의 경우 자산 명칭이 불분명하고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규격, 수량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득·처분·교환 등 발생순으로 정리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취득조서 작성하지 않고 기증받은 차량 내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고정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용역 기성대가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회계규정」 제167조의2에 따르면 병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원 청소용역 도급 과업지시서 중 청소작업 지침서에 따르면 매일 반복하는 일상청소 외에 2개월 마다 1회에서 분기별 연 4회까지 세정 작업, 왁스(Wax)코팅 작업 등 정기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청소용역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소작업 지침서에 따른 일상청소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세정 작업 및 왁스코팅 작업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서상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용역대가는 청구 시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매월 청구하는 용역 완료계, 납세증명서, 근로자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서 등만 제출받아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구성 등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2018. 7. 30.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표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2012. 5. 21.) 권고안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14. 9. 25.)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참여시켜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여야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승진, 전보 등의 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 운영방향과 기준 등을 직원에게 공지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8. 7. 30. 인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재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존 선임된 내부위원 5명에 외부위원으로는 ###과 ***만을 참여시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3. 27. 차량용 유류횡령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 건 징계심의를 의결하는 등 6회에 걸쳐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지 않은 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9. 2. 16. 직원 승진인사 계획(안)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면서도 소속 직원에게는 승진 방향 및 기준, 승진요인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간호직 6급으로 @@@을 승진 의결하는 등 3개 직종 21명에 대하여 승진 의결하였다.

그 결과 의료원의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외부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사전에 소속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임대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부
내 용

「회계규정」 제122조, 제12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고정자산을 불용결정하거나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있고 이사회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고정(중요)자산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안건을 산정하여 미리 의결을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병원내 □□□□□ 임대를 위해 2016. 8. 18. \$\$\$\$와 임대차계약(계약금액 15,853,200원)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고정자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위 \$\$\$\$이 1억 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화재보험(사고당 3천만 원 이상)가입증서를 미제출 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증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이사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안동의료원장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2월·12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는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 및 제7조, 「회계규정」 제122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상 이사회 정기회 개최시기가 다른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고, 2017년 2분기, 2018년도 2분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2016. 6. 28. 서면 의결한 안동의료원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을 차기 이사회(2016. 7. 27.)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고정자산인 체외충격파쇄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감정의뢰, 매각공고 불용결정을 하는 등 이사회가 부적정하게 운영되었다.

조치할 사항 **안동의료원장은**

앞으로는 이사회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이사회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